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KBIZ 중소기업연구소

정책브리프

Vol 27 | 2022.7월

Contents

Ⅰ. 이슈진단 1
-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의 유연성 확대

Ⅱ. 중소기업 정책연구 3
- 유럽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제와 시사점

Ⅲ. [부록] 중소기업 경기전망 5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의 유연성 확대 (1/2)

곽원준 숭실대학교 교수(KBIZ정책연구단)

Ⅰ 주52시간 근무제

■ **(주 52시간 근무제)**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제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구조>

법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	=	총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12시간 한도		1주 52시간

■ (운영 지침)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고,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음

-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므로 사업체는 직원의 퇴근을 강제하여야 함

Ⅱ 중소기업 운영 관점에서의 문제점

■ **주52시간 근무제관련 현장애로**

- 임금감소로 인한 숙련 인력의 이탈,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행이 어려움, 신규인력충원의 어려움 등

■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문제점**

- 유연근로제의 최대 기간인 6개월이 짧음
- 근무 일정을 사전에 확정해야 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음
- 출퇴근 시간을 노동자가 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쳐야 함

■ **(부작용)** 근로시간을 줄이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에도 불구, 신규채용자 증가가 일어나지 않음

- 젊은이들이 기피하며 인력부족 현상이 만성적인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등)에서 기존 인력들이 수입감소 등의 이유로 이직하며 고용상황 악화
- 노동집약적인 영세사업장일수록 신규채용의 어려움 및 숙련직원의 이탈과 같은 고용문제가 심각함
-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회사 쪼개기 등 일명 소사장제가 속출함

Ⅲ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주52시간 근무제 운영안 제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6.23)**

-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기존에도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면 특정 주의 근무시간을 52시간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었지만, 복잡한 신청 과정 등의 이유로 도입률이 높지 않았음**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일 방침

Ⅳ 새로운 주52시간 근무제 운영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

■ **노동계의 반발**

- (민주노총)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
- **(한국노총)**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의 유연성 확대 (2/2)

■ 경영계의 환영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

V 새로운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정책 방향

■ 구인난 지원을 위한 개선안의 시급한 도입

-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고, 비대면 산업의 발달로 급증한 배달원이나 유튜버와 같은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수입이 대기업 근로자를 넘어서는 등 중소기업 고용환경은 매우 좋지 않음
  - 그렇다고 지원자를 일단 고용하고 보기에는 세계 최저 수준의 노동유연성이 기업을 주저하게 함
- 당장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안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

■ 위반행위에 대한 단계적 지도와 처벌

-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잘못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이지만 인력난이 극심하고 인사관리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는 기업의 사업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너무 가혹할 수 있음
- 기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컨설팅과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을 거쳐 업종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도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새로운 근로환경과 기업특성에 대한 고려

-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이 근로환경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주간 혹은 월간 근무시간을 규제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생산성과 비례한다는 시대에 맞지 않는 프레임에 근거하고 있음
- 또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통하여 성장이 정체된 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주당 몇시간 일하라고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공은 창업자와 직원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는' 뼈를 깎는 노력에 기반함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사실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없지 않음
- 근로자가 이직할까 눈치를 보는 것이 중소기업계 전반의 분위기이고 강력한 근로기준법과 무서운 사내외 노조단체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강압적인 연장근로는 언감생심임
- 근로자도 연장근로를 못하여 수입이 줄어들어 불만인 상황에서 노사합의에 근거한 연장근로는 노사에 윈윈임
- 정부의 역할은 연장근로시간의 월단위 관리와 같은 친기업적이면서도 친근로자적인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고, 노사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지원해야 할 것임

※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중소기업지원관련 법제와 시사점 (1/2)

송재일 명지대학교 교수(KBIZ정책연구단)

Ⅰ 유럽의 중소기업 현황

■ **EU 27개 회원국에서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은 종업원 수 249인 이하의 기업을 말함**

- EU 내 중소기업의 의미는 2003년 EU집행위원회가 발의한 권고안(Commission Recommendation 2003/361/EC)에 따라 중기업(Medium)은 종사자 50-249인; 소기업(Small)은 종사자 10-49인, 영세기업(Micro)은 종사자 10인 미만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최근 EU 중소기업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European SMEs 2021/2022: SME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에 따르면, EU 내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의 99.8%, 고용은 민간부문 고용의 64%(8,300만명 종사), 부가가치 비중은 52%에 달함**

- 가장 많은 중소기업 유형은 영세기업(Micro)으로 회원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80~90%임
- 유럽에서 중소기업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전반을 지지하는 근간으로 인식

Ⅱ 유럽의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제

■ **유럽의 중소기업 지원법제는 2008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이하 'SBA')이 유일함**

- EU는 1951년에 6개 국가에 의하여 유럽의 석탄과 철강의 연합체로 설립, 주로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동맹으로 발전하였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EU차원의 지원은 오랫동안 이루지지 않았음
- 2000년 리스본 조약에서 처음으로 유럽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이때부터 EU집행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우선(Think-small-first)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 실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08년에야 유럽 내의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더 나은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SBA가 제정되었음

■ **SBA는 EU집행위원회의 '제안서(Communication)'로서 원칙적으로 권고에 국한되어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는 연성법(soft law)이고, 개별국가의 법률과 같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법(ACT)'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중소기업 지원입법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취지; EU 회원국들이 중소기업 입법을 하고 회원국의 중소기업 관련법을 해석하는 데 판단기준으로 기능

■ **SBA는 다음과 같은 10대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음**

〈SBA 10대 원칙〉

Ⅰ.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하고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Ⅱ. 파산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
Ⅲ.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하라(Think-small-first)"**는 원칙에 따라 법규를 설계한다.
Ⅳ. 공공 행정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
Ⅴ.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게 **공공 정책 도구들을 조정**한다 :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국가 원조 가능성들을 더 잘 활용한다.

유럽의 중소기업지원관련 법제와 시사점 (2/2)

〈SBA 10대 원칙(계속)〉

Ⅵ. **중소기업의 금융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상거래에서 적기의 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법적 환경과 사업 환경을 발전시킨다.
Ⅶ. 중소기업이 **EU 단일시장에서 제공되는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준다.
Ⅷ. 중소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와 모든 형태의 혁신**을 촉진한다.
Ⅸ. 중소기업이 **환경적인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한다.
Ⅹ. 중소기업이 **시장의 성장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장려하고 지원**한다.

■ **SBA 제정 이후 일련의 중소기업 정책(SME strategy)이 SBA에 기반하여 유럽연합 및 회원국들에서 시행되고 있음**

- 지금까지 약 90개의 정치적 이니셔티브와 5개의 유럽차원의 법령이 SBA의 원칙을 반영
- EU 회원국의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의 다양한 중소기업 프로그램이 마련됨

〈EU의 주요 중소기업 프로그램〉

-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중소기업을 위한 직접지원 프로그램(2014년부터 EU 예산이 배정)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지원기관(50개국의 600개 파트너, 중소기업에 자문 기능을 수행할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으로 구성, EU내외의 국제적인 개발협력, 기술이전 지원, 컨설팅, 입법 시 중소기업계의 의견 반영 채널)
- European SME week
  기업가 정신 강화(창업 멘토, 재기, 우수사례, 창업친화적 행정)
- SMEs' access to markets
  2011년에 유럽 표준화제도(European standardisation system) 개정작업 이행, 유럽 공통 계약법
- Late Payment Directive
  B2B, 전자거래에서 전자송장 등 대비책 마련
- SME Test
  중소기업 영향 평가제(스마트한 규제 및 간결 명확한 용어 사용)
- Taxation and SMEs
  세제 개혁, 2중과세(double taxation) 방지,
- Accounting and SMEs
  EU 회계규정 간소화, 환경경영회계제도 (EMAS ;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 SME envoys network
  중소기업 특사(회원국과 중소기업법의 이행상황을 점검)
- SME Assembly
  중소기업 총회(중소기업 대표가 정례적으로 모여 논의)
- SME Performance Review
  연차보고서, 리뷰보고서로 SBA와 SME 정책 모니터링
- Start-up procedures
  스타트업 지원(Horizon 2020, Structural funds 등)

Ⅲ 시사점

■ **유럽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중소기업 우선 지원시책을 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거의 유사함**

- SBA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 많음
- 유럽 사례를 참조, 우리도 우리 기업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이 시급

※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록] 중소기업 경기전망

8월 전망

경기전반	생 산	내수판매	수 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원자재	설 비	재 고	고 용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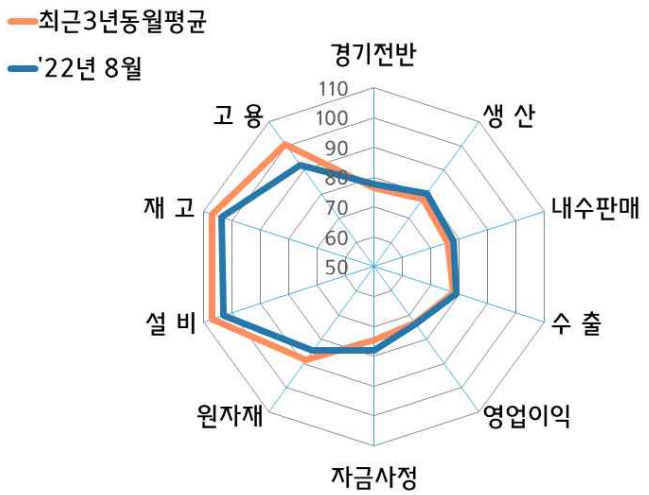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22년 8월 中企경기전망지수 78.5로 전월대비 3.0p 하락**

- 지난 5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 기록 (87.6) 이후 석달 연속 하락세
- 코로나19 재확산, 하계휴가철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체감경기 둔화* 전망

  * IMF 韓 성장전망 2.5→2.3%로 하향 조정 ('22.7)했으나 2분기 전기비 성장률 (0.7%) 고려 시 침체보다는 둔화 수준

■ **최근 3년간 동월 SBHI* 항목별 평균과 비교한 결과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 기대**

  * 100 초과시 긍정 전망 / 설비, 재고, 고용은 역계열 해석

7월 동향

국제유가 (한국석유공사)

환율 (한국은행)

금리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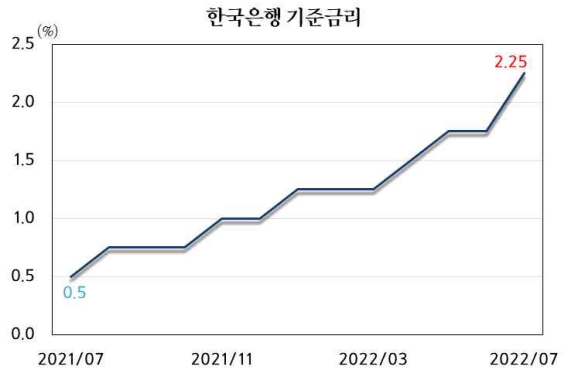

PMI (Investing.com)

* 지수>50 : 경기확장, 지수<50 : 위축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연구주제 제안
- 기고 및 연구진 참여 신청 (이력서)
- KBIZ정책브리프 운영방안

기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문의 주실 분들은
kbizlab@kbiz.or.kr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본관) | www.kbiz.or.kr